

전남지방우정청 종합감사 지적사항

□ 감사기간: 2023. 6. 19.~6. 30.(2주간)

순번	조치 구분	지적사항(요지)	비 고
1	시정 요구 및 통보	□ 상시집배특별수당 지급 부적정 ○ 도농복합 시의 집배센터가 있는 읍·면지역에 근무하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지급(45명, 13,669천 원) ⇒ 과다 지급된 수당 회수 및 관리 철저	
2	주의 요구 및 통보	□ 우정9급(집배)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적정 ○ 적극적 서류전형 시 경력 환산을 잘못하여 점수에 반영하여 서류전형 점수 및 순위 변동 초래 ⇒ 관련자 '주의' 요구 및 관리·감독 철저	
3	주의 요구 및 통보	□ 인사업무 운영 부적정 ○ 성과평가서 작성 시 “양” 등급을 부여하고도 미흡한 점 미기재 및 우수한 점에 “탁월함” 등 형식적 기재 ○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승인 누락(114건) ⇒ 관련 기관에 '기관주의' 요구 및 자체 인사지침 정비	
4	주의 요구 및 통보	□ 세출예산의 중간계좌 사용·관리 부적정 ○ 중간계좌 개설 시 예금주명과 인감을 소속 우체국장 명의로 만들어 사용 ○ 입금 당일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(24건) 및 전자이체가 가능한 경우에도 중간계좌 이용(117건) ⇒ 관련 기관에 '기관주의' 요구 및 중간계좌 정당 개설·관리	
5	통보	□ 국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 업무 부적정 ○ 수의계약 예정 매수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예정(매각)가격이 낮아지거나 객관성 결여 우려 ⇒ 지방청에서 산정한 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·검토	

순번	조치 구분	지적사항(요지)	비 고
6	통보	□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보증 개선 필요 ○ 보증금액 설정 기준이 낮아(월평균 현금수납액 기준) 횡·유용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움 ○ 취급국장이 우체국FC로 보험 모집 등을 하는 경우 취급국 고시와 보험 규정의 보증기간·금액 상이 ○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거나 보증인 재산 내역을 매년 확인하지 않아 보증이 취약 ⇒ 우편취급국의 보증금액, 관리방법 등 개선 검토	
7	통보	□ 우편요금 결제 신용카드 등록·관리 소홀 ○ '16. 11월 이후 보급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는 리딩 등록이 불가하여 계약 담당 직원이 카드 실물을 복사·사진 촬영, 메모한 후 수기 등록 ○ 우편물류시스템 카드등록 화면에 카드번호 마스킹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 개연성 존재 ⇒ 신용카드 등록 개선방안(계약업체 직접 등록 등) 검토	
8	통보	□ 보험범죄자에 대한 제재 조치 소홀 ○ 보험범죄자에 대해 보험부서에서 미인지 할 경우 보험사기자 등록 누락, 모집제한 등 제재 없이 보험 모집 가능 ○ 보험사기, 횡령 등의 경우 채권보전이 필요한데도 개인 모험모집 보상금이 계속 지급되어 보험 건전성 저해 우려 ⇒ 보험범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·감독 철저	
9	통보	□ 요구불예금 모집경비 지급 부적정 ○ 전보된 직원이 요구불계좌를 유치했던 국으로 다시 전입 시 과거 모집한 요구불예금으로 인한 모집경비가 재지급 되어 형평성 논란 우려 ⇒ 요구불예금 모집경비가 정당 지급되도록 조치	

순번	조치 구분	지적사항(요지)	비 고
10	통보	□ 직원 숙소 대수선 공사업무 소홀 ○ 우본의 승인·협의 없이 대수선 계획에서 정한 숙소가 아닌 다른 부지에 숙소를 신축 ○ '22년도에 숙소 보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실제로는 48백만 원만 집행 ⇒ 대수선 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경우 본부와 협의하는 등 관리·감독 철저	